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게 천연가스 저장시설 운영재고
유지의무 부과 등〉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1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의무비축 비용 지원	3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게 천연가스 저장시설 운영재고 유지의무 부과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17.
3. 회부연월일 : 2025. 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음.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향후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됨.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물량의 사용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중대 손실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축의무량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과 같이 상시비

축의무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
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
와 별도로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여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운영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 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
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10).

Ⅲ. 검토의견

1.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의무비축 비용 지원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의무비축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를 비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현행법¹⁾은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면서 일정

1)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면제 또는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²⁾은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해당 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30일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³⁾는 해당 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9일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가스요금에 반영하고 있음.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①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최근 24개월(산정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중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속하는 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3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동절기 또는 하절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절기: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국제 천연가스 시장 상황 및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국내 천연가스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연가스 비축량의 급증으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3)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8호)

제2조(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영 제6조의3에서 정한 해당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9일분으로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 비축의무를 이행하는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비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공공 비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보와 공공과 민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서 정부의 비축 비용 부담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반면 기획재정부는 한국가스공사는 자체 수입 기반이 있고 LNG 도입 및 도매 부분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비축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4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⁴⁾ 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가스공사 등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

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2025. 2. 7.] [법률 제20196호, 2024. 2. 6., 제정]

제15조(비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의 품목·수량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축의무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공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공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 핵심자원·비축물량·비축사유·비축기간, 제3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실태보고 및 제5항에 따른 비축의무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비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②·③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비축하거나 방출·사용한 물량을 제3항에 따른 비축물량으로 보고 그 물량의 범위에서 비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비축의무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비축물량을 비축한 경우
2. 비축의무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사용한 경우

⑤·⑥ (생략)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에 비축시설 설치·운영과 비축대상 핵심자원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게 천연가스 저장시설 운영재고 유지의무 부과

개정안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게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운영재고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재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재고 유지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제5항·제6항·제7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영재고 유지의무의----- -----.

현행법⁵⁾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⁶⁾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요건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

5)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 것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 것
3.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 것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3.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비량의 30일분,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공공 비축의무⁷⁾와는 별도로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운영재고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재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천연가스 수급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공공성을 가진 한국가스공사와 달리 자가소비를 위해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국내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민간사업자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 재고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7)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둘째, 개정안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게 천연가스 운영재고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는 가스도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포함되므로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공공 비축의무 외에 추가로 상업적 운영재고 유지의무를 지게 되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셋째, 안 제10조의10제5항은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적정한” 운영재고를 유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재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재고의 유지물량과 사용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일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10조의10제6항은 운영재고 유지의무의 면제·감경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대강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⁸⁾.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자가소비용으로만 수입하고 재고관리 역시 자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8) 예를 들어, 현행법 제10조의10제3항은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면제·감경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음.

사실상 상시 비축의무 부과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민간LNG산업협회는 현행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물량의 국내 가스시장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년도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재고 유지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4